

2025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5년 4월

 대저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류 태 윤

목 차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5.02.20.	65명	○ 제55기 결산보고서 ○ 2024년 조합원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의 건 ○ 임원(조합원인 이사, 비상임감사) 선출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5.01.24.	12명	□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 차입금 최고 한도 승인 □ 외상매출금 임시한도 부여 및 운용방침 결정 □ 조합이사 자기거래 여신 승인 □ 제55기 결산보고서 심의 □ 2024년 조합원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의 건 심의
2025.02.25.	11명	□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탈퇴심사 □ 2025년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별 배점 결정 □ 인사·급여관련 제규정 일부 개정
2025.03.27.	13명	□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탈퇴심사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 및 시설물 현 황	사무소	유통 센터	경제 사업장	농협 창고	하나로 마트
	5	2	1	1	3
	미생물 제조장	육묘장	유류 판매소	집하 선별장	토양 진단실
	1	1	1	2	1

나. 인원 현황

구 분	임원					직원							
	조 합 장	이사		감 사	계	상 무	지 점 (소) 장	팀 장	과 (차) 장	5급 이하 정규 직	업 무 직	비 정 규 직	계
		상 임	비상임 (사외)										
인 원	1	1	11(1)	2	15	3	5	1	15	33	8	6	71

3. 정관변경 사항 (2024.11.29.개정)

현행	개정 (안)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u> 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공고방법) ----- ----- ----- ----- <u>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전송 등(이하 현행과 동일)-.</u>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한다. 1. (생략) <u>2. 가구원수</u>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10조(가입) 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생략) <u>2. 가구원수</u>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자) ① (생략)

② 조합원은 20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0좌이상을 출자 한다.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생략)

② ~ ④ (생략)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생략)

④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제18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200좌 이상-----
-. -----
--- 1,000좌 이상을 출자한다.

제21조(우선출자) ① -----

--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

② ~ ⑨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임
원(조합장은 제외한다)-----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⑥ (생략)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생략)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 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일 이용한 금액 : (650)만원 이상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① -----

-----.

1. ~ 11.(현행과 같음)

2. -----

-----.

가. -----

----- : (760)-----

나. (생 략)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
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
균잔액 : (2,500)만원 이상

라.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65조(선거일)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
하여 동시에 실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
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
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생 략)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나. (현행과 같음)

다. -----

----- : (3,000)-----

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
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5조(선거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첫 번째 -----.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
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합-----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⑤ (생략)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4. (생략)

② (생략)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피선거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우리조합
·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 ----

----- 감사위원장-----
-----조합공동사업법인-----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선거공고) -----

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10. (생 략)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

----- 항에서 -----

-----.

② -----

-----.

-----.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일 까지 열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생 략)

<신 설>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 ③ (생
략)

<신 설>

----- 3일간 -----
----- .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현행 4항과 같음)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
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라 주민등
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
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4
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
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관할위원회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

④·⑤ (생략)

제76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③ (생략)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6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

없다.

② (생 략)

제77조의3(선거공보) ① (생 략)

<신 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

제77조의11, 제77조의12의 규정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

④ -----
--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후보자 및 선거인----- 경
력·학력·학위·상벌·범죄경력--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
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
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77조의4(선거벽보) ① (생략)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
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
“로, “발송“은 “첨부“로, “규격을 넘
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 (생략)

제77조의5(어깨띠, 윗옷, 소품) 후보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
(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호
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

-----.

⑦ ----- 제6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7조의4(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합-----

----- 게시판 및 조합과
협소한 장소-----.

③ ----- 제4항부터 제7항-----

-----.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어깨띠, 윗옷, 소품) 후보

자등은 -----

-----.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호

보자등은 -----

-----.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후보자들은 -----

-----.

1. 인터넷 -----

2. 전자우편-----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들은 -----

-----.

제77조의9(예비후보자) ① 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른 방법
2.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77조의12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신 설>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0(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5 및 제77조의8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1(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77조
의6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
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
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
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
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
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
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
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⑤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조합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2(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
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
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
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9 (생 략)

제77조의10(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
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
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
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제77조의13 (현행 제77조의9와 같음)

제77조의14(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생략)

<신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
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
나 요구하는 행위

5. (생략)

제77조의11 ~ 제77조의15 (생략)

제77조의16(기부행위의 정의) 이 정관
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
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
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2. (현행과 같음)

3.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
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
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 제4호까지-----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7조의15 ~ 제77조의19 (현행 제77
조의11부터 제77조의15까지와 같음)

제77조의20(기부행위의 정의) -----

-----.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2. (생략)

제77조의17(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 라.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

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1(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

1. -----

가. -----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
----- 축의·부의금품-----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략)

3.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77조의18(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
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
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
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생략)

제77조의19 ~ 제77조의21 (생략)

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다. ~ 바.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조합의 직무
상 행위는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
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
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
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7조의22(기부행위제한기간) -----

-----.

1. -----
-- 1년-----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3 ~ 제77조의25 (현행 제77
조의19부터 제77조의21까지와 같음)

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8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설치 등) ① -----

「지방자치법」제7조-----

-----「지방자치법」제7조제4
항 -----

----- 하며, 감염병 발
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읍·면·
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
조합원 -----

-----.

②、③ (생략)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⑥ (생략)

제96조(준용규정) 제69조, 제72조제1항、제3항、제4항,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21까지,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제64조 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2조、제77조의3、제77조의10、제77조의13、제77조의15、제77조의16、제80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77조의2 중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8조의2(선거운동) ① ~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합-----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준용규정) ---- 제72조(제2항은 제외한다)-----

----- 제77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7조의10(제3항은 제외한다),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25까지-----

-----, ----- 제72조제4항 -----

제72조、제77조의3、제77조의14、제77조의17、제77조의19、제77조의20、제80조 -----

-----.

제98조의2(선거운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② (생략)

③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피선거권) -----

-----.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3. (현행과 같음)

4. -----
----- 이사의 직을 사직
함 -----

----- 그 -----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_____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
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
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
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
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이사
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7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
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
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
”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
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
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
-----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
별로 등록된 ----- 성별, 연령
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

-----.

④ (현행과 같음)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사(조
합장을 포함한다) 정수-----
-----.

④ (현행과 같음)

제107조(준용규정) ① ----- 제
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
다),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
외한다)-----
-----.

----- 제75조제5항 ---

-----.

② (생 략)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 략)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 략)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조합원인 -----

3. -----

----- 감사위원장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조합 -----
----- 이사의 직을 사직함 -----
----- 그 -----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조합 -----

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
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4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
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
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적어 1
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
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서 신설>

제118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4
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
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
의3,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05조의 규정은 비
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
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

제114조(선거절차) ① -----

----- 단수 또
는 복수----- .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
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 . 단, 제1
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
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준용규정) ① ----- 제74
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76
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

----- 제75

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생략)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생략)

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 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 2에 따른 조합

조제5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조합 -----

-----.

5. (현행과 같음)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일 이용한 금액 : (130)만원 이상

나. (생략)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500)만원 이상

라. (생략)

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항·제5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98조의2제2항·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 : (152)-----

나. (현행과 같음)

다. -----

----- : (600)-----

라. (현행과 같음)

제137조(준용규정) -----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5항·제6항,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

-----.

----- 제74조제1항

----- 제75조제

5항 -----

-----.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생략)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삭제>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신설>

<별표>

구비서류 일람표

구분	부수	발급자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 (주) 1.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함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 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구비서류 일람표

구분	부수	발급자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 (주) 1.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함
2.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 우리농협 정관 전문은 대저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1) 하나로봉사단 급식봉사

- 일시 : 1월 3일, 강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 관련단체 : 하나로 봉사단

2) 쌀 나눔 행사

- 일시 : 1월 22일, 대저농협 본점
- 관련단체 : 적십자 봉사회 (대저1동·대저2동)

3) 떡국떡 · 소고기 나눔 행사

- 일시 : 1월 21일, 대저농협 본점
- 관련단체 : 하나로 봉사단

4) 하나로봉사단 급식봉사

- 일시 : 2월 7일, 강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 관련단체 : 하나로 봉사단

5) 조합원 손자녀 장학금 및 관내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 일시 : 2월 11일, 대저농협 본점
- 대상 : 낙동중학교, 대저중학교, 대상초등학교, 대저초등학교, 덕두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 및 장학금수령인 14명

6) 여성조직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 일시 : 2월 14일, 대저농협 본점
- 대상 : 관내 거주 중·고교생 10명
- 관련단체 : 주부대학동창회, 대저농협부녀회, 농가주부모임, 하나로 봉사단

7) 하나로봉사단 급식봉사

- 일시 : 3월 7일, 강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 관련단체 : 하나로 봉사단

2. 경제(유통)사업

- 판매사업 : 33,176백만원의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3.71% 성장
- 구매사업 : 3,874백만원의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24.42% 성장
- 마트사업 : 1,982백만원의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1.35% 성장
- 경제사업지표 102,042백만원 대비 39,732백만원의 실적으로 38.94%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1,422백만원 증가하여 3.71% 성장

경제사업은 전년동기대비 전체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구매사업은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농자재의 적극적인 판매추진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통하여 더욱더 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사업의 경우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등 판매농협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사업의 경우 전년에 이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특산물 사은행사 및 판매상품 다양화로 고객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 상호금융예수금 잔액은 552,675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27백만원 감소하여 -2.73% 성장
- 상호금융예수금 평잔은 542,139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28백만원 증가하여 0.52% 성장
-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471,531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391백만원 감소하여 -3.36% 성장
- 상호금융대출금 평잔은 480,747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849백만원 감소하여 -2.01% 성장

4. 기타사업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며 자산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농협도 작년 한 해 동안 약 35억원의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을 실시하여 총 대손충당금 잔액 13,804백만원으로 잠재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선제적 채권관리 강화, 무수익자산 감축 및 특수채권 회수를 통한 자산건전성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언제나 조합원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농협이 조합원과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용사업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중 정기예금은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산증식 수단으로서 이용가능한 방법이오니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가족 1인 1통장·1보험·1카드 갖기 캠페인, 출자금증대, 우리농협마트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농협 임직원은 항상 준비된 자세로 고객과 조합원님의 마주하실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종합금융·영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5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 감	성장률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102,042	39,732	38.94	38,310	1,422	3.71	113,711	-73,979	-65.06
	판 매	80,000	33,176	41.47	32,616	560	1.72	91,912	-58,736	-63.90
	구 매	12,100	3,874	32.02	3,114	760	24.42	11,821	-7,947	-67.23
	마 트	7,800	1,982	25.40	1,955	26	1.35	7,597	-5,616	-73.92
	가 공	0	0	0.00	0	0	0.00	0	0	0.00
	기 타	2,142	701	32.70	625	75	12.06	2,380	-1,680	-70.57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581,000	552,675	95.12	568,202	-15,527	-2.73	544,532	8,143	1.50
	평잔	565,000	542,139	95.95	539,311	2,828	0.52	563,791	-21,652	-3.84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505,000	471,531	93.37	487,922	-16,391	-3.36	484,842	-13,310	-2.75
	평잔	496,000	480,747	96.92	490,596	-9,849	-2.01	485,069	-4,322	-0.89
보험료		7,500	1,742	23.22	1,785	-43	-2.42	7,537	-5,796	-76.89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35,440	I .유동부채	46,529
현금	3,461	외상매입금	1,479
외상매출금	4,131	단기차입금	31,359
재고,생물자산	3,185	기타유동부채	13,691
기타유동자산	24,662	II .금융업예수금	552,675
II .금융업예치금	112,247	III .금융업차입금	14,032
III .금융업대출채권*	472,545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0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0	V .비유동부채	949
V .비유동자산	37,265	장기차입금	0
투자자산	12,755	기타비유동부채	949
유형자산	24,464	부채 합계	614,184
무형자산	0	I .출자금	22,300
기타비유동자산	46	II .자본잉여금	3,804
		III .자본조정	-69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V .이익잉여금	17,278
		자본 합계	43,312
자산 총계	657,497	부채와 자본 총계	657,497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3월말 (A)	'25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3,552	13,176	-376
영업비용	9,279	9,811	532
매출총이익	4,273	3,365	-908
신용사업	3,256	2,197	-1,059
경제사업	1,017	1,168	151
판매비와관리비	3,094	2,616	-478
영업손익	1,179	749	-430
교육지원사업준비	435	448	12
영업외손익	0	401	401
법인세차감전손익	744	702	-42
법인세비용	0	0	0
당기순손익	744	702	-42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